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 전문가 15인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위촉 -
- 8월 초 1차 회의 시작으로 추계 작업 본격 착수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지난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동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수급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받았으며, 이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총 15명의 위원 중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은 8명, 수요자단체 추천위원은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으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 이라고 강조하며,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명단
2. 관련 법률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방영식 044-202-2430
		담당자	서기관	안웅식 044-202-2431

붙임 1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명은 가나다순

성명	소속	직위	추천단체·기관	위촉근거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보건의료 기본법 제23조의2 제6항 제1호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 학회·연구기관 중복 추천 (한국경제학회)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선희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의	
이상규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원장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장성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	대한의사협회	
정재훈	고려대 의과대학	조교수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	대한병원협회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실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 기본법 제23조의2 제6항 제2호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조교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 학회·연구기관 중복 추천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 기본법 제23조의2 제6항 제3호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공급자단체 중복 추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수급추계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 ~ 5. (생략)

④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수급추계위원회는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후단 생략)

1.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3.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⑦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직종별로 각각 위촉하되, 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모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한다.

⑧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